



‘압력밥솥’ 4중안전장치로 개선

압력밥솥의 특성상 소비자는 주의사항 잘 지켜야



지난해 12월말 경북 영천에서 전기압력밥솥이 터져 노인이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고, 다음날 대구에서는 콩을 삶던 압력밥솥(非전기식)의 폭발로 어린이가 놀라 응급실에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또다시 놀라게 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국내 대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압력 밥솥이 조그마한 설계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러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폭발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의 비난이 빗발쳤으며, 이회사의 압력밥솥은 전량 리콜 조치한 바있다.

이 사건이후 2004년 8월 산업자원부에서는 전기압력밥솥의 폭발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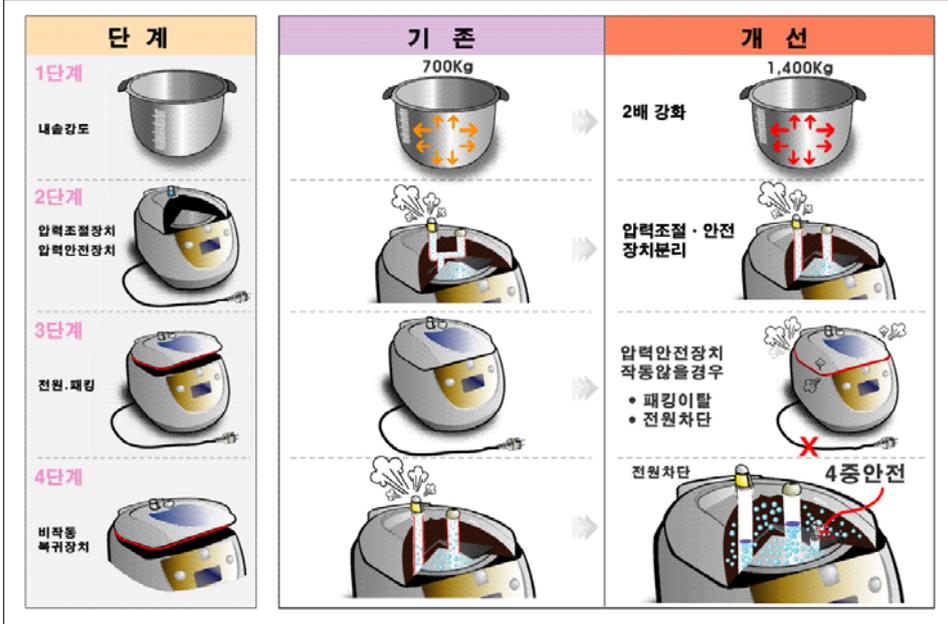
압력밥솥의 강도를 정격압력의 3배에서 6배로 올려 높은 압력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의 압력조정장치(노즐, 증기배출구)이외에 높은 압력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압력 안전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중으로 작동되도록 하였다. 또

한 이와 같은 이중압력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일정 압력 이상에서는 고무패킹에서도 압력이 누출되도록 하는 등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전기압력솥4중안전장치로개선



이와 같이 제품의 설계·제작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조치에 더하여 사업자는 최종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제품에 대해 압력시험을 하도록 하는 전수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불량 제품이 원천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압력밥솥의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안전 조치 이전에 출고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사례분석에 따르면, 일반압력밥솥(비전기식)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10건의 위해사례가 있었고 그중 45%는 폭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불량에 의한 사고는 연간 1건이었고 20건 이상 대부분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콩·팥 등 껍질이 발생하거나 한약같이 작은 절편(조각)이 있는 것, 끈적끈적한 음식과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 등을 삶거나 조리하다가 이들 재료가 노즐을 막아 압력이 높아져 폭발하거나 화상을 입은 사고 등이다. 또한 고무패킹 등의 부품의 교환주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불량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압력밥솥을 사용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소비자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